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6-22

의 정 부 지 방 법 원

판 결

사 건 2019가단133004 근저당권말소

원 고 [redacted]시

소송대리인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0. 4. 21.

판 결 선 고 2020. 5. 12.

주 문

1.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[redacted]지방법원 [redacted]등기소 2005. 12. 15. 접수 제13328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6-22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 [redacted]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6-22

[별지]

부동산의 표시

1. [redacted]도 [redacted]시 D 답 453㎡

2. [redacted]도[redacted]시 E 답 653㎡. 끝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6-22

청 구 원 인

1. 당사자 관계

원고 [redacted]시는 소외 C 에 대해 지방세 체납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고,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('이하 이 사건 부동산'이라고 합니다)에 대해 채무자를 C 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근저당권자입니다.

2.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및 근저당권

가.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소외 C 이 2005.12.15.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소외 F 주식회사 에게 매매를 원인으 2015.3.13.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습니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6-22

나.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2005.12.15. 채무자를 C 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150,000,000원으로 하여 [redacted]지방법원 [redacted]등기소 접수 제133286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.

3. 지방세 체납과 압류처분 등

가. 원고는 소외 C 의 이 사건 부동산 중 [redacted]도 [redacted]시 D 토지에 2013.5.6. 이 사건 부동산에 각 압류등기를 완료하였으며, 제소일 현재 C 의 재산세 및 지방소득세(양도소득) 지방세체납으로 납부독촉 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는 등 현재까지 체납액은 21,897,950원의 체납세 있습니다. (갑 제1호증 C 체납리스트)

나. 또한 원고는 소외 C 보유로 확인되는 재산에 압류를 진행하였으나 고액의 근저당채무 압류등기로 인해 체납처분의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체납자 C 이 2015.03.13. 매매로 소유권 이전 F 주식회사 상태입니다.

4.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

위 사실들을 기초로 원고는 소외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진행하여 체납액 징수를 추진하고 있으나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해 공매처분의 실익을 판단할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. 그러나 소외 C 과 피고 사이의 2005.12.15. 접수된 제133286호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근저당권부 채권은 민법상 10년의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역수상 분명합니다.(민법 제162조 제①항)

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 또한 부종성에 따라 소멸되었음이 명백합니다.

5. 채권자대위권

한편 원고는 소외 C 에 대한 채권자로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민법 제404조에 의거 소외 C 과 현 소유자인 F 주식회사을 대위하여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취득 하였다 할 것입니다.

6. 결론

따라서 원고는 체납자인 소외 C 등을 대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.